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61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9,133,250원, 지방교육세 11,681,070원, 농어촌특별세 5,947,2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가. 원고는 2013. 4. 3. 핫팩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2. [redacted]시 B 공장용지 1,621㎡, C 창고용지 1,62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13. 7. 22. 위 [redacted]시 B 공장용지 1,621㎡ 지상에 있는 건물 중 320㎡를 증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증축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06,277,320원, 농어촌특별세 21,254,460원을 각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27,933,070원, 지방교육세 11,563,010원, 농어촌특별세 5,886,240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4. 7. 28. 원고의 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39,133,250원(본세 136,188,000원 + 가산세 2,945,250원), 지방교육세 11,681,070원(본세 11,538,800원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가산세 142,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47,230원(본세 5,769,400원 + 가산세 177,83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D과 사업협력 및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의 생산 설비만을 빌려 원고의 관리 하에 핫팩을 생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소 제조업체로서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redacted]스가 제품 제조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D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핫팩을 제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가 D의 생산 설비를 임차하여 기계를 설치해 놓은 장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35.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D의 생산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초과하는 나머지 64.5%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4. 3. 설립될 당시부터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redacted]시 F(B)였는데, D의 현재 주소 역시 [redacted]시 F 제1호동이고,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②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3년 말까지 매입한 기계장치는 450만 원 상당의 공기압축기와 78만 원 상당의 똑딱이 접착기계 등 합계 598만 원 상당일 뿐이고, 2013. 12. 2.경 제작을 의뢰한 기계는 핫팩 제조 설비가 아닌 제작된 핫팩의 자동포장기이다.

③ 원고가 2013. 7. 1. D과 체결한 사업협력 및 OEM계약에 대하여는 상호 거래처 중복 및 생산제품 차별을 이유로 2014. 3. 31. 해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조사한 2014. 4. 4. 당시 건물의 입구 간판에는 원고와 D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무실이 있는 1호동 2층 입구에는 D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무실 안쪽에는 D 관련 액자가 10여개 걸려 있었으며, 별도로 원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회사의 관리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로 피고의 직원과 면담한 H의 명함에는 원고 및 D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공장과 창고 내부에서 원고가 제조하는 핫팩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소지와 D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중복되는 점, 원고는 원고가 제조원으로 기재된 핫팩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핫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원고와 D의 사업협력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D이 D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D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바, D의 위와 같은 사업 수행을 원고의 사업 수행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D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더라도 D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D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D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핫팩을 생산하는 작업의 과정상 원고가 아닌 D이 핫팩의 제작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 및 위 사업협력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핫팩을 제조하여 D에 납품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D 사이에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 및 정산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 및 사무실에서 원고와 D의 직원들의 업무 및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공장과 창고 내부에는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 없이 D의 핫팩이 생산 및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거래처인 [redacted]스의 요구에 따라 D과 사업협력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것에 정당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박수현